

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?

사회적기업은 경영 지원, 시설비 지원,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,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나 반드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다. 이번호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을 알아본다.

정리_ 편집부

사회적기업이 되는 요건

1. 조직형태

- 민법상 비영리법인·조합·상법상 회사
- [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]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- [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]에 따른 생활협동조합
- [사회복지사업법]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[공인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]에 의한 단체
-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

2. 유급근로자 고용

-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/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
-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(임용, 상용), 파트타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(단,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), 인증을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

3. 사회적 목적 실현

- 일자리 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
- 사회서비스 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,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

- 혼합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

- 기타형 :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(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결정)

4.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

- 서비스 수혜자, 후원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.

5.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-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30% 이상이어야 함.

6. 정관이나 규약

- 인증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 목적, 사업 내용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춰야 함.

7.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

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.